

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- 1. 계약목적**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(시설급여)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. 계약기간** : 입소 신청 시 입소기간(계약기간)을 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~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인정기간으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과 자격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- 3. 계약내용** : 계약당사자명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,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 보호,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가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, 계약자(보호자)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등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.

4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(2025년)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(보건복지부) 고시

구 분		1등급	2등급	3~5등급
급 여	일일수가	90,450	83,910	79,240
	월(30일기준)	2,713,500	2,517,300	2,377,200
	공단부담금	2,170,800	2,013,840	1,901,760
	본인부담금(20%)	542,700	503,460	475,440
	감경40%대상자	325,620	302,070	285,260
	감경60%대상자	217,080	201,380	190,170
	기초수급권자	0	0	0
비급여	상급침실 이용료	해당없음		
	식대비(1일)	일반식 1식 3,300원 3식 = 9,900원		
	의료 및 약제비	병원진료비 및 약제비는 실비		

요양비-보건복지부, 식비-기관에서 책정한 수가로 인상될 수 있음.

5. 계약해제 :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,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- 1)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시
- 2)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
- 3) 대상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,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시 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자(보호자)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6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① 신원인수인의 권리

-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수 권리
-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
-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입소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② 신원인수인의 의무

-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 의무
-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
-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·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 복 의무

7. 입소절차

